

## ◎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-0261호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26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860호, 2022. 5. 3. 일부개정, 2022. 11. 4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-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
-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
-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
-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##### 나.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(안 제7조의3)

-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,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통보

##### 다. 그 외 용어 일괄 변경(대중골프장 → 비회원제 골프장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

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- 전자우편: abcdefg@korea.kr
- 팩스: 044-203-123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전화 044-203-2258, 팩스 044-203-34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